

#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 심사보고서

2019. 5. 20.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19년 5월 3일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: 2019년 5월 14일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: 2019년 5월 15일

다. 상정일자: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9. 5. 17.)

제230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19. 5. 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: 복지행정과장 김현기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나. 제출내역

-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# 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종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함.
- 종전 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’ 3,452,249천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입 처리(2019. 7. 1.)
-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추후 수입 조치

### 4. 전문위원 종합 검토보고(전문위원: 조희옥)

#### ○ 본 계획안은

‘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’ 의결로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 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전입 처리와 전출 처리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’을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’에 이입 처리하는 것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'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'의 수입계획은 종전의 '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'의 예치금 34억 5,224만 9천원을 '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'에 전입 처리하고,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 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추후 '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'으로 세입 조치하며,
- 지출계획은 임시거소 및 주택매입과 주택임차보증금 등으로 29억 3,250만원, 주거안정자금융자 및 지원에 1억 1,000만원, 예치금 으로 4억 9,531만원, 기타운영비로 268만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기존에 운영되었던 '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'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으로 금융기관 여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것을 감안하여 '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' 운영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여신 규정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없으나,
-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아닌 기금 자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,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〈표1〉 연도별 주택매입 사업목표

연 도	2019	2020	2021	2022	계
자체매입수	10	5	5	5	25

〈표2〉 연도별 기금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억원)

연 도	2019	2020	2021	2022	합계
재원(세입)	34	19	20	21	94
재원내역	폐지기금 이입	일반회계 출연금	일반회계 출연금	일반회계 출연금	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**

**6. 토론요지: 없음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**

**9. 기타사항: 없음**